

發展途上에 있는 나라의 圖書館教育 問題

千 惠 鳳

一. 緒 言

第二次世界大戰後에 새로이 發展되고 있는 나라들은 모든 學問이 그러했듯이, 圖書館學에 있어서도 그 體系와 方法論을 海外의 이른바 先進國에서 받아들였다. 아시아 近東, 大洋洲,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등의 自由陣營에 속하는 여러 發展途上에 있는 나라들은 大體로 美國¹⁾이 아니면 英國²⁾을 背景으로 그 兩國에서 發展되고 있는 圖書館教育의 類型을 거의 그대로 移植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經濟, 政治, 文化, 社會, 教育의 制度와 事情이 워낙 뒤떨어진 이들 發展途上國에 있어서 그 次元이 높고, 또 그 가운데에는 異質的인 性格과 內容의 것도 없지 않은데, 그것이 果然 그대로 消化乃至 適應되고 있을까? 한편으로는 圖書館學은 理論과 實際가 經이 되고 緯가 되어 體系化된 學問인데, 教育에 있어서 그 兩者가 果然 均衡있게 反映되고 있을까? 또 여러 水準에서 實施되고 있는 現行 圖書館教育에 있어서도 後進的인 立場에서 볼 때, 그 가운데에는 批判을 加하고 改善하여야 할 要素가 있지 않을까?

이러한 觀點에서 發展途上에 있는 主要國의 圖書館教育事情을 살펴보고

※ 필자 : 성균관대학교 교수. 도서관학 전공

1) Lohrer Alice and Jackson, William Vernon. Education and Training of Librarians in Asia, the Near East, and Latin America. Library Trends, vol. 8, no. 2, 1959.

2) Palmer, Bernard I. Education and Training of Librarians in the newly Developing British Commonwealth Countries. Library Trends, vol. 8, no. 2, 1959.

그 가운데에서提起되는 몇가지의 問題點을 相互對比하여 分析評價한 다음 그 結果를 우리의 現實에 適應시킴으로써 圖書館教育의 改善과 發展을 圖謀해 보고자 하는 바이다.

二. 獨自的인 文化的 社會現象에의 適應

緒言에서도 言及한 바와 같이 終戰後 發展途上에 있는 나라에 있어서의 圖書館學教育의 方法論은 主로 美國과 英國으로부터 導入되었거니와, 그 中에서도 美國의 影響을 가장 크게 받았으며, 그 中 筆者가 살펴본 代表的인 나라로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日本·臺灣·필리핀·파키스탄·泰國·인도네시아를 들 수 있다³⁾. 그 외에도 英國을 背景으로 하면서도 美國의 影響을 또한 받아 온 印度를 더 손꼽을 수 있다⁴⁾. 特히 美國의 圖書館教育의 類型을 거의 그대로 移植한 感을 주는 나라는 파키스탄인 것 같다. 그것은 「圖書館 管理組織에 있어서 우리는 美國教材를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같이 우리의 基本原則은 同一하나 實務에 있어서 若干의 差異를 두고 있다⁵⁾」는 一句節에 의해서도 넉넉히 首肯될 수 있다. 그래도 이 句節에는 自己 나라의 立場에서 多少의 適應性이 加味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우리가 처음으로 延世大學校에서 피바디 教育使節團의 派遣教育을 받을 때에는 純美式的 管理組織이었음이 지금도 記憶된다. 圖書館 管理組織이라면 圖書館 業務의 全般이 礎礎되며 그 가운데에는 收書·整理政策 奉仕 및 運營의 諸問題가 集約되는 것인데, 그것이 經濟, 文化, 社會의 制度와 水準이 낮은 後進國에게 그대로 適用될 理 없음은 너무나도 明白한 事實이다. 이를테면 豫算이 形편 없이 적은 後進國의 圖書館에 있어서 豫算의 規模가 방대한 圖書館의 收書 政策을 그대로 教育시켜 보았던들 그것은 한낱 理想論에 지나지 않으며 그 나라의 現實的인 實際와는 너무나도 距離가 멀 것이다. 이 경우는 그 原理

3) Lohrer, A. and Jackson, W.V. op. cit., pp. 243~274.

4) Gitler, Robert L. Library Education-The Global Scene. Library Education and Training in Developing Countries. East-West Center press, 1967, pp. 9~10.

5) Moid, Abdul. Library Education and Training in Pakistan. Library Education and Training in Developing Countries, 1967, p. 92.

와 方法論을 導入시켜 그 나라의 實情에 適應되는 收書政策論이 마땅히 教育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內容의 教育은 一定한 類型 다시말하여 판박이로 되풀이 되는 教育이 아니라, 歲月의 經過와 並行하는 圖書館의 發展에 따라 理想의 方向으로 段階的인 接近을 誘導하는 바의 適應性있는 教育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發展途上에 있는 나라 中 首位를 달리고 있는 日本에 있어서, 『圖書館教育을 위한 國家政策의 制定은 考慮되어야 할 基本的인 諸要素의 分析이 必要하며, 이에는 現實的인 要求와 綜合的인 長期計劃의 必要性이 同時에 強調되어야 한다.』고 前提하고 『이 圖書館教育政策에 있어서 考慮되어야 할 諸要素는 國內의 歷史的 發展의 觀點에서 생각하는 同時에 國際的인 密接한 紐帶의 見地에서도 생각하여야 한다⁶⁾』고 力說한 것은 適切한 表現이라 생각된다. 또한 英國의 背景으로 發展되고 있는 나라에 있어서도 이러한 獨自的인 適應의 思潮가 高潮되고 있어 注目을 끌게 한다. Palmer 는 『오스트레일리아, 뉴우지일랜드, 印度 및 南아프리카가 그네들 自身の 制度를 樹立하고 그네들 自身の 必要에 適應시키고 있다⁷⁾』고 云云하였다.

오늘날 우리는 西歐의 새로운 思想과 理念을 土臺로 하면서도 그것을 批判하여 長點과 短點을 가려내고, 이것을 우리 民族 우리 社會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며 또 어떻게 作用하도록 할 것인가를 모색하고 있는 黎明期에 處해 있다⁸⁾. 그 中 一分野가 바로 우리 圖書館界에도 該當되므로 圖書館教育에 있어서도 새로운 理論과 實際를 導入하면서도 우리의 文化的 社會現象에 適應되도록 教育政策을 樹立하여야 한다.

三. 理論과 實際教育의 均衡

開拓期에 있어서의 圖書館教育은 專門職教育이라기 보다는 單純한 職業的

6) Saito, Kunio. Future Needs for Trained Library Workers in Japan. Library Education and Training in Developing Countries, 1967, p. 105.

7) palmer, B.I., op.cit., pp. 229-230.

8) 韓國近代化의 理念과 方向—東國大學校開校 六十周年記念學術심포지움 論文集—서울, 東國大學校. 1967.

인 訓練을 目的으로 이루어지는 傾向이 짙다는 評이 있다. 專門職으로서의 司書職은 機械的으로 分類・目錄이나 處理하면 그 資格을 갖추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이다. 아시아에 있어서 圖書館學教育이 가장 盛行되고 있는 印度에 있어서도 『一般的으로 圖書館學 커리큘럼이 分類・目錄에 지나치게 置重되고 있다는 不平이 있다. 事實上 印度에 있어서 圖書館學 專攻學生의 授業時間數의 50%가 分類・目錄에 利用되고 있는 實情이다. 따라서 다른 科目들은 그나머지 時間에 모두 다루어져야 되므로 書誌學 參考業務 圖書選擇등의 科目은 거의 無視되지 않을 수 없다⁹⁾』고 批評하고 있는 것이다.

現代圖書館은 한 나라의 全般的인 教育이 進行되고 있는 總體이며, 그 目的은 各階各層이 意圖하고 目的하는 바의 인포메이션을 바람직하게 傳達하는데 있는 것이다¹⁰⁾. 따라서 專門職으로서의 司書職은 이렇듯이 教育과 文化暢達이라는 次元이 높은 機能을 지니고 있는 社會施設에서 實로 至大한 課業 即 世界的인 知識과 인포메이션을 評價, 蓄積, 組織, 傳達하고 再生過程을 거쳐 다시 發展을 꾀하는 使命을 專擔하고 있는 奉仕職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專門職은 그 背景을 單純한 實務에만 의존할 수 없는 것이다. Martin 은 『專門職을 育成하려면 圖書館教育은 理論的으로 어떻게 깊이 파고 들어 갈 수 있는가를 배우게 하는 한편 그 理論의 適應에 있어서 技術과 判斷을 어떻게 가르치는가의 問題가 重要하다¹¹⁾』고 하였다. 결국 專門職 育成을 위한 圖書館教育에 있어서는 理論과 實際의 均等한 啓發을 그 目標로 設定하여야 할 것이다. 勿論 Shera 등이 『圖書館學의 理論的 基礎를 붙이는 問題와 現場에서의 圖書館活動의 範圍 및 그 活動의 多樣性 問題를 結付시키는 일은 매우 어려우며, 現在의 司書 育成計劃에는 복잡한 事項이 너무나도 많이 包含되고 있는 同時에 그 育成의 根本的인 原理가 아직도 發見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司書職 育成에 있어서의 理論的인 面과 實踐的인 技術

9) Toney, Bernard J. Indian Library Science Training, 1911~1965. Journal of Education for Librarianship, Vol. 8, No. 2, p. 120.

10) Bonn, George S., ed. Library Education and Training in Developing Countries. p. 183.

11) Martin, Lowell A. Research in Education for Librarianship. Library Trends, vol. 6, No. 2, 1957, p. 208.

을 엮어는 原則이 나타나기를 바란다¹²⁾』고 하였듯이 무엇을 理論이라 하고 어디서부터 實際的인 技術이라고 할는지 어려운 點이 없지 않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理論은 基本이 되는 知識의 內容이 어떠한 原則(principles)에서 어떠한 目的(purpose)과 効用(validity)을 위하여 어떻게 組織되고 展開되어졌는가를 體系的으로 理解하는 것이라 보고 싶다.

그러므로 教育에 있어서 이러한 基本 知識을 展開시켜 준다면 「實際」即 實踐的인 技術에 있어서도 남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덮어 놓고 그렇게 쫓는다는 機械的인 思考方式이 止揚될 것이며, 보람있게 그 基本知識이 應用되어 새로운 段階의 「實際」로 進展될 것이다. 또 發展途上國에 있어서는 自己의 文化的 社會現象에 適應되는 「實際」로 改變되어 發展할 것이다.

四. 短期講習

發展途上國의 初期 圖書館教育은 大體로 그 나라의 圖書館協會가 主催하는 短期講習이 아니면 養成所의 短期課程에서 이루어졌으며, 그 履修者에게는 所定の 資格證이 授與되었다. 그 例로서 日本¹³⁾, 臺灣¹⁴⁾, 印度¹⁵⁾등을 손쉽게 들 수 있다. 그러나 그 期間이 終戰後 가장 오래 繼續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뿐이었다. 勿論 그 短期訓練이 이미 基礎的인 圖書館教育을 받은 司書로서 새로이 導入되는 分野 이룰테면 documentation 또는 information storage 와 retrieval 등의 習得을 위한 것이라든가 專門圖書館 이룰테면 醫學圖書館과 같은 特殊分野의 管理運營을 위한 短期의 現職教育이라든가 또는 館種別 圖書館의 司書에게 補修教育을 위한 講習이라면 때를 가리지 않고 얼마든지 勸奨할 일이다. 그러나 그 訓練의 目的이 그러한 테두리를 벗어나서 資格證을 授與하기 위한 一般專門職의 育成에 있다면 이것은 마땅히 再

12) Shera, J.H. et al. Education for Librarianship-Its present Status in Documentation in action. New York, Reinhold, 1956, p. 65.

13) Sawamoto, Takashisa. Training and Education Programs in Japan. Library Education and Training in Developing Countries, 1967, pp. 65~66.

14) 中國圖書館學會會報 第6期, 臺北, 民國 45. pp. 25~29 및 FitGerald, W.A. Library Misson in Taiwan. A.L.A. Bulletin, June 1959, p. 492.

15) Toney, B.J. op. cit., p. 115.

考하여야 할 問題가 아닐 수 없다. 그것은 첫째 우리 스스로가 專門職의 質的 低下를 招來케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發展途上에 있는 나라들은 專門職의 教育水準이 낮아서 司書의 社會的인 認識과 待遇가 나뭇을 개탄하고¹⁶⁾ 그 質的 向上을 부르짖고 있는 實情에 있는 것이다. 即 臺灣에 있어서는 『專門職이 그 責任에 相應하는 權威와 報酬를 받는 身分으로 昇格되지 않는 限 司書職은 매력을 끌 수 없고 또 優秀한 司書를 確保할 수 없다¹⁷⁾』고 하였으며, 印度에서도 『圖書館 專門職의 勤務와 報酬의 條件이 滿足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從來 資質이 優秀한 學生을 圖書館學 專攻으로 이끄는 데 매양 失敗하였고 이것이 特히 圖書館教育의 發展을 무척 느리게 했던 原因이었다¹⁸⁾』고 指摘하였다.

日本에 있어서는 『現在 資質이 높은 많은 司書가 要求된다』고 前提하고 『圖書館 專門職의 教育과 訓練이 再考되어야 한다는 輿論은 現圖書館教育制度가 시작할 때 부터 있었고 지금도 社會의 各階各層에서 들을 수 있으므로 專門職 司書의 水準을 높이며 그 數를 增加시키는 일이 切實히 要望된다¹⁹⁾』고 한결같이 의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時點에서 우리나라만이 專門職의 教育水準을 낮춤으로서 落後될 수는 없는 것이다. 時急한 教育政策의 樹立이 要望되며, 또한 圖書館教育과 資格證交付에 關聯되는 圖書館法 施行規則도 再檢討가 加해져야 된다고 느껴진다.

둘째 短期講習으로서의 專門職 本然의 任務를 제대로 遂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미 위의 理論과 實際教育의 均衡에서도 言及한 바와 같이 專門職으로서의 司書職은 機械的으로 分類·目錄이나 處理하면 그 資格을 갖추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이다. 그런데 그 實際마저도 實習不足인 短期의 講義式 教育만으로서의 도저히 그 技巧를 體驗할 수 없으므로 더욱 問題가 되고 있

16) Gerong, Manuel S. Future Needs for Trained Library Workers in the Philippines. Library Education and Training in Developing Countries, p. 141.

17) Lai, Yung-hsiang. Present Scene of Library Education in China (Taiwan). Library Education and Training in Developing Countries, p. 63.

18) Toney, B.J. op. cit., p. 118.

19) Saito, Kunio. op. cit., p. 105.

는 것이다. 그러므로 從前에 圖書館協會에서 實施했던 그와같은 短期養成에 의한 資格證의 授與는 止揚되어야 하며 적어도 1年特殊課程 以上에서 教育을 받는 段階로 進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五. 學士學位課程

이 課程은 中間規模의 圖書館運營을 맡는 專門職을 育成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圖書館學의 諸般原則에 대한 基本知識과 實際를 익히게 함이 그 目的이다. 주로 3·4學年에서 教育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發展途上國의 各 圖書館學科 또는 學校의 教育內容은 大體로 비슷하다. 그 中 特記할 것은 우리나라와 臺灣에 있어서는 韓國 및 中國의 古典資料의 評價 組織과 그 奉仕에 適應될 수 있는 面도 아울러 留意하고 있는 點이다. 學點數는 4年間 履修하는 總 140~160 學點中 圖書館學科 專攻科目이 44~50 學點으로 되어 있으며, 그 中 순수한 圖書館學만은 平均 40 學點 內外이다. 印度²⁹⁾를 除外한 學士學位課程은 오늘날 여러모로 評價의 對象이 되고 있다. 그 中 主된 것은 專門職으로서의 司書職은 우선 主題背景(Subject background)이 있어야만 大學圖書館, 學術圖書館, 專門圖書館 등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先進國에 있어서는 거의가 大學院의 水準에서 圖書館教育을 實施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終戰後 發展途上에 있는 나라에 있어서는 全的으로 그렇게 할 수도 없는 형편에 있다. 그것은 學部가 없는 大學院을 設置할 수 없도록 制定한 現行學制에도 抵觸되거니와 그 보다는 萬一 上級の 專門職만을 育成해 낸다면 後進性을 띤 社會制度에 있어서는 이를 다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困難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로 例를 들어 보면 公務員制度에 있어서 司書職은 5~3 級の 職階가 있는데 數的으로는 大部分이 5~4 級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20) 印度의 學士學位課程(Bachelor's course)의 入學資格은 學士學位 또는 그와 同等한 資格의 所有者이며, 教育期間은 1年이다. 現在 이 課程은 Algarh의 Muslim(1958), Madras(1960), Kerala(1961), Rajasthan(1961), Lucknow(1962), Jadavpur(1963), SNTD(1963), Gujarat(1963), Jinwaji(1964), Mysore(1965), Gauhati(1966)의 11 個 大學에 設置되어 있다.

이러한 實情에서 先進國에 있어서와 같이 碩士學位 司書만을 育成輩出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勿論 健全한 圖書館의 發展을 위해서는 바람직 할는지 모르지만 그네들이 下級 地位에는 就職할 수 없으니 결국 非專門職으로 代置케 되는 結果만을 招來할 것이다. 그러므로 發展途上國에 있어서는 아래 級の 專門職을 學士學位課程 出身으로 하는 同時에 司書職의 專門性を 考慮하여 司書職 公務員 制度에서 5級을 없애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急先的인 問題라 생각된다. 그리고 經濟, 社會, 文化의 發展으로 社會制度의 水準이 높아짐에 따라 이 學士學位課程도 並行하여 그 以上の 課程으로 昇格하는 方案을 文教政策의 하나로 構想하여야 할 것이다.

發展途上國에 있어서 學士學位課程의 存續이 社會의 客觀的 事情으로 말미암아 不可避하다는 것을 言及하였거니와, 한편 그 教育政策面에 있어서 考慮하여야 할 事項은 그네들에게 中間規模의 圖書館까지를 圓滑히 運營할 수 있는 基本資質을 賦與하여 專門職으로서의 最低限의 基本條件을 具有토록 하는 問題이다. 그것은 곧 一般, 語學 및 主題背景의 教育인 것이다.

一般教養에 對하여는 Faust 도 『司書는 市民全體에게 提示되는 社會的인 諸問題에 關하여 健全한 判斷을 할 수 있도록 一般教育이 必要하며, 또 司書는 圖書館 活動에 있어서 自身이 하는 일 또는 하여야 할 일에 關하여 健全한 判斷을 내리기 위하여서도 一般教育이 必要하다²¹⁾』고 力說하였다. Toney 는 『技術科目에 偏重한 教育은 넓은 視野를 갖춘 汎教養的인 司書を 育成해 내지 못한다²²⁾』고 하였고, Williamson 은 『知識의 背景과 理解가 實務보다는 圖書館 教育의 基礎로서 論議되어야 한다²³⁾』고 各各 主張하였다. 그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專門職이라면 우선 汎教養的인 知識이 있어야 함을 強調한 것이다.

Johnson 은 『知識에 二種이 있다. 하나는 한 主題를 우리 自身이 아는 것이

21) Faust, Clarence H. The preprofessional Education of Librarians. Education for Librarianship. Chicago, A.L.A., 1949, p. 99.

22) Toney, B.J. op. cit., p. 121.

23) Williamson, C.C. Training for Library Service; a Report Prepared for the Carnegie Corporation. New York, Carnegie Corporation, 1923.

며, 다른 하나는 그 주제에 관한 인포메이션을 어디서 찾아 낼 수 있는가를 아는 것이다²⁴⁾』라고 하였다. 前者는 主題分野에서 活動하는 專門職에게 그 主題의 背景을 形成해 주는 教育이며, 後者 또한 司書에게 必要한 知識으로 그것이 바로 語學의 土台위에서 形成되는 것이므로 特히 그 教育이 強調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圖書館教育에 있어서는 全國적으로 評價, 蒐集되고 있는 所藏資料의 比率에 따라 英語, 日本語, 漢文 또는 中國語, 獨語, 佛語의 順으로 語學教育이 要求되고 있다²⁵⁾.

이와 같은 見地에서 볼 때, 學部課程의 圖書館教育에 있어서는 圖書館學 專攻 40學點 以外の 100餘學點은 一般教養 語學 및 他主題의 副專攻으로 그 時間을 配當하여 專門職으로서의 基本資質을 갖추도록 計劃하고 實踐하여야 한다.

六. 一年特殊課程

이 課程은 圖書館學의 諸般原理에 대한 理解를 주고 司書職과 圖書館管理에 必要한 技術을 가르치며 또 바람직한 圖書館 奉仕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社會, 文化, 教育 및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知識을 賦與하여 “professional”의 타이틀²⁵⁾로서 國立 公共 大學 및 特殊圖書館의 윗 水準에서 奉仕할 수 있는 司書を 育成함이 그 目的이다. 入學資格은 主題背景을 갖고 있는 學士學位 所持者이며 그 教育年限은 1年이다. 이 課程은 美國의 1年制大學院과 그 制度가 비슷하며 또한 파키스탄의 “post-graduate diploma course²⁶⁾”와 印度의 “dipoma course²⁷⁾”와도 비슷하다. 教科目數는 파키스탄이 3~10, 印度가

24) Kyle, Barbara Ruth Fuessli. Teach Yourself Librarianship. London, English Univ. Press, 1964, p. 13.

25) Kang, Chu-Chin. Future Needs for Trained Library Workers in the Republic of Korea. Library Education and Training in Developing Countries, 1967, p. 124.

25) Kaula, P.N. An Evaluation of Education for Librarianship in India. Unesco Bulletin for Libraries, Vol. 21, No. 4, July-August 1967, p. 185.

26) Moid, A. op. cit., pp. 82~83.

27) Toney, B.J. op. cit., pp. 116~117.

28) Moid, A. op. cit., pp. 83~84.

6~9²⁹⁾, 우리나라가 10³⁰⁾(延世大)~12(成大)로 되어 있으며, 學點에 있어서는 一定치 않다. 우리 나라에 있어서는 延世大가 30學點 成大가 32學點으로 되어 있다. 이 課程의 教科目에 對하여 評價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 現職 敎育이라 해서 圖書館學 커리큘럼이 資料組織에 지나치게 置重되어 있다는 點이다. 勿論 發展途上에 있는 나라들은 各自의 圖書館이 스스로 資料의 組織業務를 解決하여야 하므로 不可避한 實情임을 認定하나, 이에 대하여는 國立中央圖書館이 國家事業으로 納本圖書를 即時 印刷카—드化하여 各級 圖書館에 配付함으로써 圖書館敎育에 있어서 資料組織의 置重敎育을 緩和시키고 보다 폭넓은 圖書館學에 대한 知識과 實際를 가르치도록 함이 要求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一年 特殊課程에 대하여 評價하고 싶은 것은 入學資格規定이 嚴格히 履行되고 있지 않아 專門職의 質的 低下를 招來하고 있다는 點이다. 勿論 이것도 現職者를 그 主된 對象으로 하고 있는 데서 起因하는 현상이겠지만 司書職의 權益을 위하여 早晚間 是正되어야 할 것이다.

七. 碩士學位課程

이 課程은 專門圖書館, 學術圖書館 및 科學技術分野의 機關에서 要求되는 專門家(specialist)를 育成하기 위함이 그 目的이다. 따라서 그 敎育은 理論에 있어서 深奧하고 實際에 있어서 特殊하며 또 最近性を 띤 問題가 그 對象이 되어야 할 것이다.

碩士學位課程은 現在 우리나라에 1校³²⁾, 日本에 1校³³⁾, 필리핀에 3校³⁴⁾ 印度에 2校³⁵⁾, 파키스탄에 2校³⁶⁾뿐이며, 司書職의 專門化要求가 漸高되고

29) Toney, B.J. op. cit., p. 116.

30) Lee, Jai Chul. Survey of Library Education and Training in Korea. Library Education and Training in Developing Countries. 1967, p. 76.

31) Kaula, P.N. op. cit., p. 185.

32) 現在 梨花女子大學校 大學院 圖書館學科가 있을 뿐이다. 延世大學校는 피바디 敎育使節團의 派遣敎育計劃에 의거 1957年에 設置되어 1962年까지 繼續되다가 同 使節團이 撤收함에 따라 敎授不足으로 中止되었다.

33) 日本의 慶應義塾大學에 大學院圖書館學科가 1967年에 設置되었다.

34) 필리핀에는 Santo Tomas 大學, 필리핀 女子大學(P.W.U)과 필리핀大學(P.U)의 3個大學에 設置되어 있다.

있는 現實에 비추어 보면 續續히 設置되어야 한다고 느껴진다. 그러나 이 問題의 解決을 위해서는 教授陣의 確保가 先行되어야 하며, 發展途上國에 있어서 當面하고 있는 難題의 하나가 된다. 이에 對한 對策으로서 發展途上國의 圖書館教育和 訓練에 關한 會議에서는

- 1) 圖書館學教授의 交換을 獎勵하고,
- 2) 美國의 圖書館學校는 地域研究計劃에 의거 그 地域을 위한 司書와 教授의 주선을 專門적으로 다루며,
- 3) 海外의 經驗이 있는 司書에게 美國에서 博士課程을 履修할 수 있는 펠로십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本國에 돌아가서 圖書館學教授가 되도록 發展시킨다는 등 그 외에도 3個의 項目을 더 들고 있다³⁷⁾. 어쨌든 時急한 問題이므로 이에 대한 對策이 조속히 강구되기 바란다.

碩士學位課程의 教科目 內容은 日本을 除外하고 大同小異하며, 科目數는 5~10, 學點數는 21~34 이나, 그 中 순圖書館學 科目의 學點은 24 内外가 適當하다고 생각된다.

日本慶應大學의 碩士學位課程은 科學技術分野의 緊急한 要求에 適應하기 위한 인포메이션에 關한 理論과 그 處理의 實際를 中心으로 커리큘럼을 焦點이 一大特徵³⁸⁾이며, 圖書館學이 工業化로 躍進하는 近代化過程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碩士學位課程에 있어서는, 첫째 祖國 近代化 過程에 寄與하는 인포메이션의 理論과 實際, 둘째 韓國學 또는 東洋學의 研究를 뒷받침하는 內容의 理論과 實際를 그 教科目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八. 其他問題

1. 司書教師의 教育을 學士學位의 水準에서 實施하여 圖書館 資料의 基本

35) 印度에는 Delhi 와 Varanasi 의 BHU 兩個大學에 設置되어 있고, 그 외에도 Delhi 大學에는 ph.d. 課程이 1965 年에 開設되었다.

36) 파키스탄에는 Karachi 와 Dacca 의 兩個大學에 設置되어 있다.

37) Bonn, G.S. ed. op. cit., p. 184.

38) Sawamoto, Takahisa. op. cit., p. 70.

知識과 應用 그리고 運用의 能力을 具有하도록 要求하고 있다³⁹⁾.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現在 實施하고 있는 冬夏季講習을 止揚하고 그와 같은 水準에서 圖書館教育이 實施되기를 바란다.

2. 圖書 및 圖書館의 利用者를 위한 圖書館學講座가 開設되어야 한다. 現在는 몇몇 教育大學과 師範大學에 있어서 國民學校 또는 中高等學校를 擔當할 教師에게 圖書 및 圖書館利用法을 1~3 學點 講義하고 있을뿐, 一般大學에 있어서는 그 講座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아무리 有能한 司書가 圖書館의 運營을 잘 한다하더라도 利用하는 教師와 學生이 圖書 및 圖書館利用法을 모르고 있다면 圖書館의 目的은 圓滑히 達成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一般大學에 있어서도 1~2 學點 程度로 圖書 및 圖書館利用法이 教養科目內에 包含되어야 한다.

3. 圖書館學科教授의 定員을 늘이고 또한 研究教授制를 實施하여야 한다. 日本 慶應大學의 學部圖書館學科는 專任 8名 時間講師 2名⁴⁰⁾, 臺灣大學의 同學科는 專任 4名, 協同教授 1名, 時間講師 6名⁴¹⁾, 필리핀大學의 同學科는 專任 4名, 時間講師 2名, 파키스탄의 Karachi大學 圖書館學校는 專任 4名, 時間講師 2名, 協同教授 5名, Dacca大學의 同學科는 專任 3名, 時間講師 11名⁴³⁾으로 各各 되어 있고, 印度에 있어서 學士學位課程은 最少 專任으로서 副教授 1名, 助教授 2名, 碩士學位課程은 最少 專任으로서 教授 1名, 副教授 2名, 助教授 4名을 基準으로 삼고 있다⁴⁴⁾.

한편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1個大學의 圖書館學科에 平均 專任 3名(弱), 時間講師 若干名으로 되어 있는 바, 결국 教授陣이 가장 不足하다는 것을

39) Saito, Kunio. op.cit., p. 107.

Kadri, W.B. Library Education and Training in Pakistan. Library Education and Training in Developing Countries, 1967, p. 136.

40) 慶應義塾大學 文學部 圖書館學科 要覽, 1965~1966, p. 2.

41) Lai, Yung-hsiang. op. cit. p. 53.

42) Damaso, Consulo. Education for Librarianship in the philippines, Library Education and Training in Developing Countries, 1967, p. 101.

43) Moid, Abdul op. cit., p. 86.

44) Toney, B.J. op. cit., p. 119.

알 수 있으니 優秀한 教授를 補充하여 質的 또는 量的으로 要求되는 條件을 具備하고, 圖書館學의 研究를 위하여 다른 學科에 있어서와 같이 研究教授 制를 實施하여야 할 것이다.

九. 結 語

以上에서 發展途上에 있는 나라의 圖書館教育 全般에 걸쳐 提起되는 몇가지 問題에 대하여 혹은 相互對比하고 혹은 分析評價하여 우리나라의 立場에서 그 對策 乃至 政策을 言及하였다. 認識을 새로이 하고 改善시켜야 할 點이 많음을 새삼 깨닫는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 諸問題를 改善하고 나아가서 그 發展을 圖謀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權威있는 圖書館教育委員會가 文教部傘下 또는 自治的으로 設置되어야 함을 主張한다. 그리하여 圖書館教育의 目標, 圖書館學教科目的 數와 種類, 教科目的 內容, 實習의 範圍, 評價方法, 教授의 資格 및 定員, 學生의 定員, 圖書館學 講習등을 共同的으로 檢討한 다음 圖書館教育의 統一된 基準을 마련하고 그 改善策을 時急히 강구하여야 한다.